##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74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민홍철・이기헌・이건태

이재강 · 복기왕 · 정준호

한정애 · 한준호 · 윤종군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하고 있음. 다만, 공사 대상 도로가 일반국도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 (InterChange)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해당 공사에 국가지원을 배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간 고속국도 접근성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공사를 도모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법률 제 호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일반국도"를 "고속국도(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반국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공사 등의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기존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  |  |
|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         | ②                 |  |  |
|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          |                   |  |  |
| 에 필요한 비용 중 <u>일반국도</u> 에 | <u>고속국도(제52</u>   |  |  |
|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 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고속국도  |  |  |
|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 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는 경  |  |  |
|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         | 우에 한한다) 및 일반국도    |  |  |
| 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          |                   |  |  |
| 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